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92
----------	-------

발의연월일 : 2021. 7. 7.

발 의 자 : 안호영 · 강득구 · 권인숙
김교홍 · 송옥주 · 윤준병
이수진(비) · 이원욱 · 장철민
홍익표 의원(10인)

제안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가정, 사무실 등 일상 생활공간에서 일반 국민이 취급하는 제품 등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황산, 불산, 질산, 염산을 일정 함량 이상 포함한 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도급신고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승인을 각각 이행해야 하여, 양 부처에 유사한 자료를 각각 제출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생활화학제품의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1항제15호 신설).

나. 도급승인을 도급신고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174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다만,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여 취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려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른 도급승인(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연장승인 및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급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연장승인 및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급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제7장 벌칙(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⑤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